

가사노동의 사적 특성과 공적 특성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Private and Public Nature in Household Work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문숙재
강사 윤소영

Dept. of Household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jae, Moon
Lecturer : So-young, Yoon

〈목 차〉

I. 문제제기	IV. 가사노동의 공적 특성
II. 가사노동의 개념	V. 결론 및 논의
III. 가사노동을 사적노동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s planned to investigate a discussion of private and public nature in household realm.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study precedent concerning the household work and the private and public nature is reviewed. Second, the origin on the privacy of household work and it's relationship of the public part are investigated. Third, it is implicated that through the politicization of household work, it is enable to establish new insight of household work in the family policy.

I. 문제제기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는 제반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특히 가정학, 사회학, 여성학, 경제학에서는 노동에 대한 개념정의로 시작하여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구분과 그 기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는 모두 일관되고 있다. 즉 가사노동은 시장노동과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서, 일

반적으로 가정내에서 여성들이 담당하는 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생성된 임금노동과 대비되는 노동으로서 무보수의 노동으로 개념화되고 있다(송혜령·이기영, 1990).

이러한 학문적인 논의는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옮겨와 일반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수준도 그러하다. 가사노동에 대한 국민 경제적 인식이 낮은 것은 주로 여성, 즉 가정주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 그 자체를 별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전통적인 성차별적 고정관념 내지 편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낮은 평가는 경제적 기능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사회적 가치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이기영, 1982).

그러나 가정은 부의 증식이 아닌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유지와 보전에 목표를 두는 단위이며(Schweitzer, 1981; 송혜림·이기영, 1990에서 재인용), 따라서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가사노동은 하나의 생산적이고 가치있는 노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려는 연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즉 무보수노동으로 여겨져왔던 가사노동에 대해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산정을 통해 그 생산성을 주장하려는 연구(김애실, 1985; 정영금, 1989; 김인숙·최은숙, 1991; 문숙재·정영금, 1991; 김정희, 1993; 김정희, 1994)와, 가사노동은 가정내 주부 혼자 전담하는 일로 여기는 것에 대해 가사노동은 모든 가족원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가정노동임을 주장하는 연구(송혜림, 1988; 김미하, 1990; 이연숙 외, 1991) 등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공적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사적노동의 개념화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밝힌 연구가 없었다.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사적노동으로의 인식은 가사노동이 개별적인 가정내에서 상황에 따라 수행되는 노동이라는 인식들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가사노동의 사적인 성격을 주장하면서 가사노동이 가지는 공적인 특성과 공적 영역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가사노동의 성격이 더이상 사적인 영역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근거들을 밝힘으로써, 가사노동이 더이상 개별 가정의 개인 주부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수행되는 노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에 앞서 우선 논의될 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 분리되어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게 된 배경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 대한

개념정의와 가사노동을 사적인 영역으로 이해하게 된 배경,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한 선입견들을 제시한 후에, 가사노동의 공적 특성과 그리한 특성을 정책 및 법안에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공적 논의는 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사적 영역으로 규정짓고 모든 가족문제들을 가정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당연한 사고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가족정책에서 가사노동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가사노동의 개념

1. 가사노동에 대한 학문적 이해

가사노동은 학문적인 논의와 주장에 관계해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학에서는 주로 여성해방론적 관점에서 가사노동의 개념을 파악하고 가사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며, Becker를 중심으로 한 전가정성 세학에서는 전통경제학적 시각을 비판하고 인간의 욕구충족에 기여하는 생산적 활동으로 그 개념을 인식한다. 또한 가정학에서는 가사노동의 생산성 인정과 함께 그 가치평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가사노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의존하여 다음의 4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산노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재생산노동에 대한 논의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마르크스가 있는데, 그는 가사노동을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수행되는 노동으로 파악하면서 가족과 사회관계를 경제학적 소유관계와 교환관계의 맥락에 치중하여 이해함으로써 상품관계의 밖에 위치하는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Jaggar & McBride, 1989; 송혜림·이기영, 1990에서 재인용). 즉 마르크스는 재생산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을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기는 해도, 그것은 그가 가사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해서라기 보다는 그것을 통

해 여성에 대한 억압과 경제적 종속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근거한 재생산노동에 대한 논의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을 노동력의 일상적, 세대적 재생산을 수행하는 노동으로 규정짓게 한다(김혜경, 1985).

둘째, 가사노동에 대해서 초기 여성학자들이 논의한 개념은 관계적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이다. 즉 가사노동의 내용에는 인간상호적 관계, 즉 가족관계를 위한 활동에 그 중요성이 부여되므로, 관계적 노동의 특성은 가사노동의 개념을 규명하는데 매우 결정적이다(송혜림·이기영, 1990). 이와 동시에 가사노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재생산 및 생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므로 교환가치를 놓지는 않으나 필요의 충족을 위한 사용가치를 놓는 것으로 필요노동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김혜경, 1985). 따라서 초기 여성운동가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가사노동을 주로 여성에게 부과된 관계적 노동 또는 필요노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관계적 노동 역시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관계적 노동으로 규정짓는 경우에는 그 개념이 단지 사적인 관계에만 제한되며, 따라서 공적인 관심과 연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와 가사노동의 사회적 의미는 왜곡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셋째, 신가정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산(household production)의 개념으로의 이해이다. 가정생산으로서의 개념정의는 Margaret Reid(1934)가 처음으로 “가정생산이란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해지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그런 활동들을 소득, 시장조건,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같은 환경이 가정밖의 누군가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시장재화나 유급의 서비스에 대체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던 것을 T. Schultz(1961), G. Becker(1965), K. Lancaster(1966, 1971), 그리고 Beutler와 Owen(1980) 등이 이론적인 개념화 작업으로 발전시켜 전개하였다(문숙재, 1990). 이 과정에서 가정생산의 개념이 가사노동과 구분되어, 가정생산은 산출물을 근거로 하는데 반해 가사노동은 사람의 일 자체

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문숙재, 1990). 그러나 이러한 가정생산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가계를 하나의 생산단위로 파악하게 하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가사노동의 생산활동과 그 가치를 가시화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넷째, GNP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특성으로 이해하는 그늘경제로서의 이해이다. 그늘경제란 일반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공적 경제의 그늘에 머무르게 되는 경제활동영역이다(Weck & Pommerehne & Frey, 1984; 송혜림·이기영, 1990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는 그늘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가사노동의 가치는 이제까지 합리적으로 평가받지 못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다. GNP의 경제지표로서의 제한점을 보완하려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파악한 연구로는 Nordhaus & Tobin(1972), Japan Economic Council(1973), Weinrobe(1974), Ruggles(1975), Adler(1978), Murphy(1978), Chadeau(1992), 김정희(1994) 등이 있다.

이와같이 가사노동에 대한 여러가지 특성을 전제로 한 개념정의는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나 주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가사노동을 임금노동과 대비되고 비생산적인 재생산노동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공동화의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와는 반대로 가사노동의 생산적 측면을 이해하고 공적 경제의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우는 가사노동의 생산성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예를들어 가사노동의 화폐평가의 당위성 주장, 가사노동의 임금요구, 그리고 가사노동의 공적 영역으로의 확대 방안으로 정책적 반영에 대한 요구 등을 제기하고 있다(송혜림·이기영, 1990). 그러나 아직까지 가사노동의 생산성 인정이나 화폐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가사노동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킨 연구들은 드문 실정이다. 이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생산성 논의나 화폐평가의 주장이 가사노동의 특성을 사적이고 개별적인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인식하여 공적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가사노동의 적극적인 공적영역으로의 확대는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적노동인가 아니면 공적인 특성을 가졌는가에 대해 중점을 둔 연구나 주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또는 제반 학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선입견에 기초하여 그 개념들을 재구성하거나 재개념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예로 가정을 단지 사적인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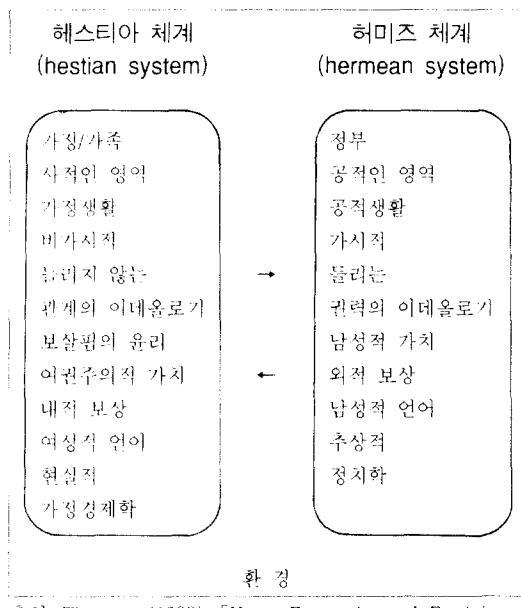
이러한 개념인식이나 일단의 개념규정은 경험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사적' 또는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사용하는 '공적'인 개념을 새롭게 인식해보면 과연 이러한 개념의 올바른 뜻은 어디에 기초하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구조적인 과정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공적인 것으로, 무엇을 사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외면해 버리고 마는 수도 있겠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공적(公的)'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공공에 관한 것'으로서 사적(私的)인 의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또한 '사적(私的)'이라는 의미는 '개인에 관계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동아사전, 1990). 그리고 '사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호자만의', '개인의', '비밀스러운', '닫힌' 등의 형용사와 관련되며, '공적'이라는 말은 '집단의', '함께', '교중의', '개방된' 등의 형용사와 연관된다.

특히 인간행동은 독특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 영역으로 특징지워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즉 인간행동의 한가지 영역은 인간적 궁핍의 영역이며, 또 다른 영역은 그 일차적 목표가 사람들과 자원을 통제하는 것으로 생존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다. 이때 전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 식, 주, 인간 관계, 인간 발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영역으로, 원초적이며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며. 후자의 공적이고 가시적인 영역과는 대조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지적된다(Thompson, 1988).

〈그림 1〉 인간행동의 두가지 체계



출처 : Thompson(1988), 「Home Economics and Feminism」, p.13.

이러한 이분적 성향은 고전시대까지 소급된다. 일상적 욕구의 영역에 관한 최초의 기술은 그리스의 'oikos' 혹은 'household'에서 나타난다. 이때 household, 즉 가정은 현세적이고, 유동적이고, 공간적 장소를 차지하는 영역이며, 일상생활의 필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된 영역이다. 고대 신화에서는 영적인 사람, 즉 헤스티아(Hestia)가 oikos를 지배하였다. 헤스티아는 Cronos와 Rhea의 첫번째 아내이자 Zeus의 누나였다. 그녀는 난로의 신, 즉 가정의 신으로 오늘날 필수적인 가족의 가치 즉 안정성과 지속성을 상징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상적인 필수적 욕구를 벗어난 가시적인 활동만이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은 'polis', 즉 도시국가의 제도로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영역의 활동만이 공적

인 영역이고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에 공적인 세계는 옹변의 신이며 다리의 수호자이고 도둑들의 신이었던 허미즈(Herman)의 통제하에 있었다(그림 1).

특히 프랑스의 고전학자 Jean-Pierre Vernant에 따르면, 사적이고 비가시적인 세계는 헤스티아와의 관계하에서 보여질 수 있고 공적이고 가시적인 세계는 허미즈와의 관계하에서 보여질 수 있다고 한다 (Thompson, 1988).

이러한 인간행동의 두가지 체계는 결국 공적영역-사적영역의 이분적 체계와 연결되면서, 가정 또는 가정밖, 여성 또는 남성, 휴식과 노동 등과 같은 일련의 개념들을 연속적으로 상기시키게 한다. 이는 공적 또는 사적인 개념의 이념적인 의미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개념과 결부되면서 우리 생활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때 가사노동이 공적영역이 아닌 사적영역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사노동을 사적노동으로 이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원인은 다음에 언급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분리와 공간적인 개념과의 연계성을 들 수 있다.

III. 가사노동을 사적노동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

1.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분리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생산의 이분체계(생산/재생산 체계)는 혼동되어왔던 공적인 개념과 사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생산체계와 노동의 분리는 남녀의 성적인 분리와 함께 수반됨으로써 그 정도를 심화시켜갔다(손덕수, 1985). 특히 공적영역-사적영역이라는 이분적인 사고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제와 함께 성별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Lopata, 1993).

결국, 이러한 이분체계는 남성은 가정밖의 ‘생산자’와, 그리고 여성은 가정내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당연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여성과 가정은 하나의 맥락으로 인식되

었으며, 그와 동시에 노동의 분리와도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념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존재하게 되었고, 생산과 소비, 직장과 가정,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 등을 한 맥락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결국,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나, 자본주의적 가정에 대한 어떠한 식의 분석에도 당연한 것으로 적용된다(가브리엘라 터나트리, 1989).

이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기존의 문헌들은 일관되게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결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이전에는 물질적 생산이 성관계 또는 재생산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자본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비로소 ‘경제적’ 생산은 인간적 영역으로 이해되면서 경제적인 것과 공적인 영역, 그리고 비경제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의 동일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로버트 해밀턴, 1982).

2. 공간개념과 노동개념의 연계

한편 가사노동의 사적 특성을 논할 때, 우리는 가정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사적공간으로 규정됨으로써 노동과 연관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가정이라는 공간적 개념과 가사노동이라는 노동 개념이 연관되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결국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가사노동이라는 개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사적이고 공적인 개념을 논할 때에는 물리적인 경계가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 있는가, 또는 그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는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적인 공간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드나듦이 매우 제한된 공간으로서 개인적이고 비집단적인 공간을 말하는 반면에, 공적인 공간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집단지향적이며, 구성원의 수는 문제시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집단적 또는 개인적 공간상의 구분은 남성 또는 여성의 성(性) 분리와 함께 개념화되곤 한다. 예

를들어 Duncan(1982)은 남성들은 공적 공간(public space)에 지향적인 반면, 여성들은 사적 공간(privacy space)에 지향적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공적 공간은 카페와 같은 개방된 장소나 남자들을 위한 클럽, 그리고 공공기관 등을 말하며, 사적 공간의 대표적인 예로는 집(house)을 일컫는다. 더우기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일수록 사회적인 지위는 집단지향적인 소비와 표현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비집단적인 대상인 집은 이런 역할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남성에게는 집이 단지 가치있는 재화를 담는 용기(container)와 같은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여성의 사적 영역으로의 집에 대한 개념은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일수록 강하다(Duncan, 1982). 예를 들어 Ulithi족의 Micronesian 집단과 Melanesian 집단, 그리고 일부 힌두교 집단¹⁾을 들 수 있다. 이를 집단에 있어서 여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가정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때의 집은 여성의 영역이며, 사적인 공간이며, menstrual house²⁾로서 인식된다. 그러나 남성은 아주 적은 시간을 사적 공간인 집에서 보내며, 일하지 않을 때에도 카누 보관소(canoe sheds)나 클럽형태의 남성 전용공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의 공간상의 분리는 일반적인 사적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한다. 좀더 개인주의적인 집단일수록 또는 좀더 근대로 옮수록 이러한 성향의 정도는 줄이 들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정을 사적인 공간으로 영역화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공간상의 개념구분에 성적인 구분을 함께 수반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

IV. 가사노동의 공적 특성

1.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논의

가사노동이 개별 가정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가사노동의 특성을 사적노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가 자본주의의 노동분리를 통해 가정과 가정밖의 공간상의 분리를 뚜렷이 하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성계중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이 사적노동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었지만, 다음의 몇 가지의 논의점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인 논의를 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가정기능의 문화측면을 들 수 있다. 즉 예전에는 가정에서 수행하던 기능들이 점차 가정밖의 사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오늘날 가정밖의 사회가 공적으로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예전에는 가정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경제, 교육의 기능이 과거에는 개별 가족이나 씨족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이러한 기능들은 사회의 공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중坚으로 재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기능이 본래부터 사적특성만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욕구의 영역으로만 기능하였다는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생활수단의 상품화 과정에서 세워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의 사적노동으로의 개념화를 정당화하거나 노동력의 가치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세화공이나 재봉사의 노동은 그것이 행해질때는 사적이며 구체적인 형태로 수행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산물이 시장에서 다른 상품들과 동가를 이루게 될 때 그 구체적 노동은 추상화되며 가격을 가지게 된다(김혜경, 1985). 이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도 노동력이라는 시장상품을 냉는 이상 그 노동의 사적인 기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인도 남부의 Mysore 주의 집단, 인도 북부의 Uttar Pradesh집단.

2) 여성의 주기적인 생리와 혈액순환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남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한하는 장소.

셋째, 가정의 공간 개념과 가사노동의 노동개념의 연계를 통한 가사노동의 사적인 논의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즉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 사적인 특성을 지닌 노동으로 규정된다면, 사적공간을 벗어난 가정밖의 사회에서 수행되는 노동 가운데 가사노동의 성격을 가지는 노동부분은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예를들어 가정내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사회에서 식당의 서비스형태를 통해 제공될 때, 후자의 노동에 대해 단순히 가정밖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공적특성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노동이 가지는 성격이 단순히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의존해서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의는 생산성논의를 통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인 GNP부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¹¹을 뒷받침할 수 있다.

넷째, 가사노동이 사적인 개별공간내에서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활동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하나의 노동형태로서 가사노동은 일반적 노동의 역사적 변동에 따라 계속 그 형태와 내용이 변화되는 속성을 지니며, 외부세계와 계속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노동은 그런 의미에서 사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 생산과정과 관련된다. 가사노동의 산물 역시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든, 노동력의 형태든 간에 사회의 생산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 경우 사회와의 관계형태가 직접적인가 간접

육은 놀이집단 및 복지기관과 함께 하고 심리적 지원은 치료 전문 및 알코올 중독 방지회 등과 같은 집단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양육활동은 가정과 다른 기관들 간에 공유된다고 하였다. 또한 Lasch(1977), Ehrenreich and English(1978), Wilson(1977), 그리고 Donzelot(1980)은 국가행위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이념적 구분을 전복시켰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페이스 엘리엇, 1993).

다섯째, 국가의 가정생활에 대한 개입에 대한 주장을 들 수 있다. 특히 현대 국가가 국민의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활동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내외정책을 추진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각종 생활 장애를 해소하고 경제분배의 불평등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가정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더 이상 은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제 공적부분과 사적부분간의 경계는 더이상 분명하지 않다.

결국 가사노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공적 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롭게 제안될 ‘다섯 번째’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가사노동의 공적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가사노동의 정치화’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지향될 때에야 비로소 가사노동에 대한 생산성 요구와 가치평가의 당위성 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힌' 영역으로 인식되며, '공적' 영역은 '집단의', '개방된' 영역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개념은 개인 또는 가족생활이 국가적인 통제를 어느 정도 받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또는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 어느정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가정이 사적영역으로 이해되는 것과 일반적으로 국가의 개입이나 통제로 부터 자유롭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커나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가정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새로운 요구에 대해 조작적이지 못한 까닭에 국가의 정책에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또한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집단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가정은 정책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활동에 국한되거나 보충적 역할에 그치며,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회 집단보다 여전히 비정치적 집단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의 설립이 되는 결혼에서부터 자녀 출생과 연루된 문제 및 결혼의 파기에 이르기 까지 정책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시기를 찾기 힘들다. 결혼의 경우 공식적인 법적 혼인의 권리와 우선하며, 자녀 출생 후 출생신고로부터 의무교육 및 자녀양육에 이르기 까지 일상 생활 깊숙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 봉건 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구성원은 점차 시민社会의 시민으로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가는 커다란 힘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하게 되었다(Gobetti, 1992). 더욱이 가족 및 가정 형성 그리고 그 유지 및 해체가 도덕적 규범에 의하여 지배받고 통제되었으나, 현대의 복지국가는 가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개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변화순, 1991). 한 예로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부부간의 성관계 및 가정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사적영역 개입은 단순히 가족의 복지 향상과 그로 인한 사회질서 유지 및 안녕의 추구에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때에는 누구를 위한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사적영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여성들은 공적영역의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에 의해 개인의 생활이 구속당하고 있다.⁴⁾ 약자를 위한 복지적 차원의 정치적 개입이든, 남성 자신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한 차원의 정치적 개입이든, 여성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길이 막연할 뿐이다.

따라서 여성의 영역이고, 사적영역으로 치부하는 가정에 대해 누가가 공권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윤리하고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역으로서 가정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형성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중재하는 사회적 조직의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와같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여부를 가지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이분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사적영역으로만 국한시키려는 가부장적 사회 이데올로기의 모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정책에 대한 가정의 사적인 특성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가정내에 남아있는 '가정주부'일 것이다. 즉 공적인 영역에서 가정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과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또한 낮으며, 특히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가정주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한 예로 구조기능주의자들은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며 가사노동은 사적인 노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로 꼽힌다. 기능주의 이론이란 사회를 상호관련되고 상호의존적인 부부들의 체계로서 이해하고, 부부들은 자체내에 상호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로서의 사회는 형평 또는 균형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

4) 한 예로 입법부인 국회의원 가운데 전대적으로 여성의원수가 적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라서 가족에 대한 기능론적 분석은 가족과 다른 사회 제도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의 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족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리고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들을 알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핵가족과 여성의 어머니 역할은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성과 가정은 사적 영역과 연관되고 남성과 정치 및 경제는 공적 영역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한다(페이스 엘리엇, 1993). 또한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전체 사회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하위구조인 각 가정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 즉 가정은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여러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가정내 주부가 취업하여 어린 자녀를 가족 밖의 다른 누군가에게 위탁하여 대리 양육하거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각 가정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가 이를 떠맡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기능주의자들의 기본 개념은 우리의 의식구조와 행동에서 잘 나타나며, 특히 공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다루게 될 때 떠올리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증가하는 여성취업률에 비해 아직까지 어린 자녀를 위탁해 줄 믿을만한 탁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이 부모들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취업률의 증가와 함께 정부는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여성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모성보호정책이나 보육시설을 확대시키려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된 육아휴직제도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그것이다. 더우기 1995년 7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1995년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정책에 또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육아휴직 제의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라는 점, 육아휴직이 무급휴가라는 점,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는 전체 여성근로자 가운데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이러한 정책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정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모성보호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지향한다는 입장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여성 취업을 유도하거나 국가의 다른 정책적 개입과 같이 적극적으로 여성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더우기 이러한 정책적 제안에서는 가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써 단순히 사회가 가성을 도와준다는 차원일 뿐이다.

3.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흔히 법을 '사회생활의 규범'이라고 한다. 규범이란 일정한 사회적 당위에 부응한 준칙적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적 당위는 그 사회의 기본구조, 사회조직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법은 그 사회구조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의 법적 지위란 그 사람에게 인정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신인령, 1983).

근대 사회이후 가사노동은 무보수의 노동이고 사적인 노동인데, 이를 어떻게 평가함으로써 법체계내에서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가족법에서는 가사노동은 화폐적 임여가치를 낳지 못하는 무보수의 노동이므로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전업주부의 위치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인정되었다(김엘림, 1991). 따라서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는 남편이 부담하며 주부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이혼이나 기타 사고 발생 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어왔다.

이러한 가족법에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1990년 가족법 개정이후 개선되어,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부들도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

며, 따라서 생활비 공동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득세법과 상속세법, 사회보장법 등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가사노동은 사적인 특성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9; 최광, 1990). 사회보장법은 1인의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을 전형적인 가족유형으로 유형화하며, 여성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아동양육 또는 노인이나 장애자 보호 기타 가사노동 전담자로서 남성에 의한 생계의존자 또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의 지급여부 및 산정 규정에 있어서 사망한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인 남은 배우자는 소득활동여부에 관계없이 부양대체급여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지만, 사망한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인 남은 배우자가 수급권자이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등급 이상의 장해상태에 있어야 한다(국민연금법 제 63조 제 1항 제 1호). 이것은 유족인 가족구성원이 소득활동을 하는가의 여부가 유족연금의 지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여성을 경제적 무능력자로 전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제 1순위의 유족연금수급권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피보험자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 규정함으로써(국민연금법 제 63조 제 1항), 피보험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연금기대권에서 발생하는 유족연금은 두번째 배우자가 독점하게 된다. 이것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험급여기대권이 없는 이혼배우자가 가족의 존속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등권 뿐만 아니라 이혼의 자유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자유에 간접적이지만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전광석, 1995). 더욱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 839조의 2)의 이념이 국민연금법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혼인중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시키고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법도 배우자 중 특히 아내를

법률상의 무능력자 또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보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행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결혼중에 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남편의 채권자가 그 재산을 압류할 때 의의를 세기할 수 없음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전적으로 자기 몫을 찾아가는 청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해석상의 이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배우자 상속분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한다는 과세원칙을 근거로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에 대한 과세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최광, 1990).

이와같이 우리나라 법체계 내에서는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성별노동분리에 따른 여성의 시위지하와 함께 비생산적이고 가치가 없는 노동으로 인식되는 예가 혀다하다. 공식적인 법체계나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가정, 가사노동, 가정주부를 사적공간, 사적노동, 경제적 의존자로서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활사체가 이분화된 영역체계, 즉 공적영역-사적영역에 의해 차별되고 있음을 증거한다.

V. 결론 및 논의

현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사적인 속성을 갖고, 무보수로 수행되며,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으로 규정되고 인식된다. 이러한 가사노동-사적인 활동-무보수 활동-여성중심적 활동이라는 일련의 연결점들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점차 생산과 구분되어 소비 그 자체의 조건을 마련하는 소비노동이며, 개개의 가정내에서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사적인 노동으로만 인식되었다.

이때 가사노동을 사적특성을 가진 노동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영역-사적영역이라는 이분적인 사고체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공적영역-사적영역의 분리는 일반적으로 성적 분리를 수반하면서 성계총화의 수단으로 작용되었으며, 이러한 계

총화는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재생산이라는 노동분리를 통해 한층 강화되었다. 그 결과 생산과 재생산의 노동이 가정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분리되었고, 특히 사적인 공간인 가정은 여성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이 가정내 노동과 여성을 연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은 사적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개념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체계가 아니라 두 영역의 연속선상에 놓고 볼 때, 과연 그것이 사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가정이 수행하던 기능들이 가정밖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적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 본래 가정의 기능이었다는 점, 가사노동이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점, 가사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가정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모두 사적이라는 사고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공간적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사노동이 사회적 노동과의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 특히 현대 국가는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에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 등의 근거는 가사노동이 공적인 특성을 가진 노동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공적인 특성을 논의할 필요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다시 말해 가사노동의 사적논의로 인해 어떠한 비용을 치루는가? 이러한 의문제기를 통해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가사노동의 사적논의는 가사노동에 대한 생산성 논의나 화폐적 가치인 측정을 실현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이론적인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가사노동을 공적인 노동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가사노동에 관련된 모든 주장과 이론들을 생활속에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정치화가 가능해짐으로써 제도권하에서 가사노동을 이해하는 시각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전제된 후에 가사노동의 또다른 개념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새로운 개념화 작업을 통해 가사노동의 공적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한 기본틀이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둔다. 앞으로의 연

구는 가사노동에 대해 공적노동임을 인정하고 가사노동의 적극적인 정치화노력을 위한 방법론의 제시가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가브리엘라 터나투리(1989).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전문주부의 탄생과 여성소비자”.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
- 2) 김광석(1995). “가족과 사회보장법”. 가족정책토론회 1995년도 학술대회자료집 : 삶의 질 선진화와 가족정책. pp.71-100.
- 3) 김미하(1990). “노동자 가족의 성별분업”. 한국가족론. 서울: 가치. pp.207-246.
- 4)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3(4). 한국여성개발원. pp.25-47.
- 5) 김외숙 · 이기영 · 최은숙(1993).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
- 6) 김인숙 · 최은숙(1991). “농촌여성 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pp.121-134.
- 7) 김정희(1993).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pp.37-50.
- 8) 김정희(1994).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대 GNP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9) 김혜경(1985).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10) 로버트 해밀턴, 최민지 역(1982). 여성해방논쟁. 풀빛 출판사.
- 11) 문숙재(1990). 가정생산. 서울: 신광출판사.
- 12)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pp.285-302.
- 13) 문숙재 · 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 14) 문숙재 · 채옥희(1986).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 15) 변화순(1991).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여

- 성연구 33. 한국여성개발원, pp.6-41.
- 16) 손덕수(1985).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대출판부.
- 17)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 실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18) 송혜림(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서구 산업 사회와 한국에 있어서 사회정치적 관점들”.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16차 학술대회 자료집*.
- 19) 송혜림·이기영(1990).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와 그 평가”. *생활과학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 연구소. 제 15권, pp.16-19.
- 20) 신인령(1983). “한국 법제상 여성의 불평등”. *여성학*. 서울: 이대출판부.
- 21) 오옥화(1995). 재산분할청구권과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22) 이기영(1982).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본 가사노동의 의의와 그 전개. *고대사대논집* 6.
- 23) 이연숙 외(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 24) 정영금(1989).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25) 페이스 엘리엇(1993). *가족사회학*. 안병철·서동인 역. 을유문화사.
- 26) 죄 광(1990). “세법과 성평등”.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세제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무장관(제2)실.
- 27)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 28) 헬가 마리아 헤르네스(1989). “여성과 복지국가: 사적의존에서 공적의존으로의 변화”.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
- 29) Duncan, J.S.(1982). “From Container of Women to Status Symbol : the Impact of Social Structure on the Meaning of the House”, *Housing and Identity – cross-cultural perspectives*. Holmes & Meier Publishers.
- 30) Lopata, H.Z.(1993). “The Interweave of Public and Private : Women’s Challenge to American Society”. *JMF* 55. pp.176-190.
- 31) Gobetti, D.(1992). *Private and Public*. Routledge Publishers.
- 32) Seccombe, W.(1974). “The Housewife and Her Labor under Capitalism”, *NLR*, 83, Jan-Feb, pp. 3-24.
- 33) Thompson, P.J.(1988). *Home Economics and Feminism*. Home Economics Publishing Collective UPEI.